

연구원 규정

1998. 3. 6 제정

2014. 1. 29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.29)
- 제 2 조 (임용권자) ①연구원은 총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.
②(삭제 2002.7.19)
- 제 3 조 (종류) 연구원은 경력직연구원 (전산직연구원 포함)과 계약직연구원으로 한다. (개정 2002.7.19)
- 제 4 조 (경력직연구원의 직급) 경력직연구원의 직급은 연구원, 주임연구원, 책임연구원, 수석연구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(임용기간) ①경력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2.7.19)
②경력직연구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2회에 한하여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2.7.19)
③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통산 3년 이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프로젝트별로 임용되는 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그 프로젝트의 종료시까지로 하나,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때에는 본문을 적용한다. (개정 2002.7.19)
- 제 6 조 (자격) 연구원으로 임용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직무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연구
2. 연구 관련 업무
3.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업무
- 제 8 조 (보고의무) 연구원은 매년말 교무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2.7.19)
- 제 9 조 (정년) ①연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.
②정년에 달한 연구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 (개정 2002.7.19)
- 제 10 조 (보수) ①연구원은 임용 당시에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.
②유급의 연구원 중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의 보수는 교비에서 지급하며,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 연구원의 보수는 당해기관의 자체비용으로 지급한다.
- 제 11 조 (복무) 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2.7.19)

연구원 규정

부 칙(1998. 3. 6 제정)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①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연구원(전산직연구원 제외)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②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산직연구원으로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까지로 한다.

부 칙(2002. 7. 19 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재직중인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, 그 임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직 연구원에게는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 1. 29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